



「WON통장」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WON통장」

·상품특징 : 스마트뱅킹 특화, 종이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예금상품

2 거래 조건

☞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 <u>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u> 또는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표시됩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상품유형	• 보통예금 또는 저축예금
거래방법	 신규: 영업점 및 우리은행 비대면 채널에서 가입 가능 전환: 인터넷/스마트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기보유한 보통예금 또는 저축예금을 이 상품으로 전환 가능 (뱅킹 로그인 → 예금·신탁 → 종합통장상품전환) 해지: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 개설기간 1개월 미만 계좌이거나 잔액100만원 초과 계좌 또는 연결계좌보유계좌는 영업점 방문 해지만 가능
기본이자율	• 연 0.1% (2024.08.29 세금납부 전 기준) ※ 적용이자율은 매일 변경 고시되며 금리 변경 시에는 변경 고시일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이자지급시기	• 예금의 이자 결산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에 실시하며, 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 (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자 산출근거	•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약정한 금리를 적용하여 원가일(원가에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이자 지급 ※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 기간으로 함

구 분		내 용	
수수료	• 이 통장에 대해 영업점 창구를 통한 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를 월 1회 초과하여 요청한 경우 창구거래수수료 *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단, 아래 ①~④에 해당될 경우 창구거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① 본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을 위한 창구거래 ② 200만원 이상의 출금 또는 자금이체를 위한 창구거래 ③ CD/ATM 등 자동화기기 장애로 인한 창구거래 ④ 전자화폐 충전을 위한 창구거래 ※ 창구거래수수료만 면제되며 타행이체수수료 등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은행거래수수료만 면제되며 타행이체수수료 등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은행거래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창구거래수수료 : 비대면채널 전용통장인 이 예금의 거래자가 전자금융을 통해 은행거래를 하지 않고,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여 출금 또는 계좌이체 등을 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 우대	• 이 통장은 우리은행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는 경우에(로그인 1회 이상)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이체 수수료 및 우리은행 ATM 출금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고 다른은행 수수료 ^{주1)} 면제혜택을 총 5회 제공 (수수료여 '0원하라' 이벤트 적용 / 이벤트 기간: 별도 통지시까지) • 수수료 우대혜택은 이번달 16일에 생성되며 WON통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한해 수수료 면제혜택을 제공 주1) 다른은행 수수료 - 다른은행 ATM기 이용한 현금출금수수료(단, 은행 외부에 설치된 타행제휴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WON통장(우리꿈통장 포함)을 복수로 보유한 경우, 수수료 면제 횟수는 고객 보유 WON통장(우리꿈통장 포함) 전체합산 5회		
예금자보호 여부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수 있음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휴면예금 및 출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조회가능합니다. 		

구 분	내 용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거절 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 제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원칙적으로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모든 거래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기존 예금에서 이 상품으로 전환하신 후, 기존 통장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계좌번호, 자동이체, 현금카드 등은 변경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 디지털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